## 조정지역 변경 안내

(정책모기지부, 20.12.17.)

## 1. 조정지역

	투기지역(16개)	투기과열지구(49개)	조정대상지역(111개)
서울	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('17.8.3) 종로, 중구, 동대문, 동작('18.8.28)	전 지역 ('17.8.3)	전 지역 ('16.11.3)
경기		과천('17.8.3), 성남분당('17.9.6), 광명, 하남('18.8.28), 수원, 성남수정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·기흥, 동탄2 <sup>주1)</sup> ('20.6.19)	과천, 성남, 하남, 동탄2('16.11.3), 광명('17.6.19), 구리, 안양동안, 광교지구('18.8.28), 수원팔달, 용인수지·기흥('18.12.31), 수원영통·권선·장안, 안양만안, 의왕('20.2.21) 고양, 남양주 <sup>주2)</sup> , 화성, 군포, 부천, 안산, 시흥, 용인처인 <sup>주3)</sup> , 오산, 안성 <sup>주4)</sup> , 평택, 광주 <sup>주5)</sup> , 양주 <sup>주6)</sup> , 의정부('20.6.19) 김포 <sup>주7)</sup> ('20.11.20) 파주 <sup>주8)</sup> ('20.12.18)
인 천		연수, 남동, 서('20.6.19)	중 <sup>주9)</sup> , 동, 미추홀, 연수, 남동, 부평, 계양, 서('20.6.19)
부산		-	해운대, 수영, 동래, 남, 연제('20.11.20) <u>서구, 동구, 영도구, 부산진구,</u> <u>금정구, 북구, 강서구, 사상구,</u> <u>사하구('20.12.18)</u>
댖		수성('17.9.6)	수성('20.11.20) <u>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</u> 북구, <u>달서구, 달성군<sup>주10)</sup>('20.12.18)</u>
광주		-	<u>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</u> 광산구('20.12.18 <u>)</u>
대 전		동, 중, 서, 유성('20.6.19)	동, 중, 서, 유성, 대덕('20.6.19)
울산		-	중구, 남구('20.12.18)
셓	세종('17.8.3)	세종('17.8.3)	세종 <sup>주11)</sup> ('16.11.3)
충남		-	청주 <sup>주12)</sup> ('20.6.19)
충남		-	천안동남 <sup>주13)</sup> ·서북 <sup>주14)</sup> , 논산 <sup>주15)</sup> , 공주 <sup>주16)</sup> ('20.12.18)
목		-	전주완산·덕진('20.12.18)
하 다		-	여수 <sup>주17)</sup> , 순천 <sup>주18)</sup> , 광양 <sup>주19)</sup> ('20.12.18)
경이나 경이나		-	포항남 <sup>주20)</sup> , 경산 <sup>주21)</sup> ('20.12.18)
경남		<u>창원의창<sup>주22)</sup>('20.12.18)</u>	<u>창원성산("20.12.18)</u>

- 주1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 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
- 주2) 화도읍,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
- 주3) 포곡읍, 모현읍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・사암리・미평리・좌항리・맹리・두창리 제외
- 주4) 일죽면, 죽산면, 삼죽면, 미양면, 대덕면, 양성면, 고삼면, 보개면,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
- 주5) 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촌면,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
- 주6) 백석읍, 남면,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
- 주7) 통진읍, 대곶면,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
- 주8) <u>문산읍, 파주읍, 법원읍, 조리읍, 월롱면, 탄현면, 광탄면, 파평면, 적성면, 군내면, 장단면,</u>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
- 주9)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
- 주10) 가창면, 구지면, 하빈면, 논공읍, 옥포읍,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
- 주11)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
- 주12) 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면,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
- 주13) 목천읍, 풍세면, 광덕면, 북면, 성남면, 수신면, 병천면 및 동면 제외
- 주14) 성환읍, 성거읍,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
- 주15) <u>강경읍, 연무읍, 성동면, 광석면, 노성면, 상월면, 부적면, 연산면, 벌곡면, 양촌면, 가야곡면,</u>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
- 주16) 유구읍, 이인면, 탄천면, 계룡면, 반포면, 의당면, 정안면, 우성면,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
- 주17) 돌산읍, 율촌면, 화양면, 남면,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
- 주18) 승주읍, 황전면, 월등면, 주암면, 송광면, 외서면, 낙안면,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
- 주19) 봉강면, 옥룡면, 옥곡면, 진상면,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
- 주20) 구룡포읍, 연일읍, 오천읍, 대송면, 동해면,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
- 주21) 하양읍, 진량읍, 압량읍, 와촌면, 자인면, 용성면,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
- 주22) 대산면 제외